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안내

보험명칭 : 2023-2024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기간 : 2023년 11월 3일 24:00부터 2024년 11월 3일 24:00

보험가입 안내(일괄·기본 가입)

명칭	구분	내용
단체보험 보통약관	1인당 보상한도	4천만원(1약사당)
	1청구당 보상한도	4천만원(1청구당)
	협회 총 한도	10억원
	자기부담금	30만원(1청구당)
	적용대상	대한약사회 회원신고를 필한 회원
	배상내용	조제 등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약화사고

보험가입 안내(선택·추가 가입)

구분	종류	내용
특별약관	경호비용담보	- 2백만원(1청구당) - 연간보상한도 200만원 - 본인부담금 10만원 - 연간보험료 : 31,000원
	벌금비용담보	- 2백만원(1청구당) - 연간보상한도 200만원 - 연간보험료 : 19,000원 - 본인부담금 없음
	휴업손해보장	- 300,000원(약사당□1일당) - 연간보상한도 450만원(최대 15일 한도) - 연간보험료 : 35,000원 - 본인부담금 없음

□ 주요 보장내용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	소송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보상한도액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손해배상금	사고발생 후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보험사 동의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	보험사와 사전협의 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어관한 비용	보상한도액내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 보험료를 보상

□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의약품으로 생긴 배상책임
12. 결함 있는 의약품등의 회수, 검사 또는 대체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13. 의약품등 자체의 하자에 인한 배상책임
14. 전매(專賣)를 목적으로 판매 또는 공급한 의약품등에 인한 배상책임
15.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조제 또는 판매된 의약품에 인한 배상책임
16. 의약품등 제조회사의 책임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 약속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17.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